2026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필수 · 의무 교육 안내

보육사업안내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

교육명	구분	내용
보육교직원 · 원장 직무교육	근거	• 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, 제11조의 2, 제 20조, 제39조의 4
	대상	•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 •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
	교육시간	• 40시간
	교육정보	• **[보육교사]** -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(승급교육을 포함)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※ 보조교사, 연장전담교사, 대체교사 등 동일 적용(근무시간과 무관하게 2년의 근무 기간으로 함) • **[원장]** -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※ 현직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함
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	근거	• 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, 제11조의 2, 제 20조, 제39조의 4
	대상	•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자 ※ 취업 전 만 2년 이내에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[별표1] 비고의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없는 사람
	교육시간	• 40시간
	교육정보	•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(채용 이전)까지 교육을 받아야 함 - 다만,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, 집합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※ 제외대상 ※ - 만 2년 이내에 보육업무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- 기존 40시간 이상의 시간과 관계없이 보육업무 경력이 있고,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• **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**
특별 직무교육	근거	• 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, 제11조의 2, 제 20조, 제39조의 4
	대상	• 영아·장애아·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• 영아·장애아·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※ 보조교사, 연장전담교사, 대체교사 등 동일 적용(근무시간과 무관하게 2년의 근무 기간으로 함)
	교육시간	• 40시간
	교육정보	• 영아·장애아·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•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
보육교직원 승급 교육	근거	• 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, 제11조의 2, 제 20조, 제39조의 4
	대상	•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: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사람 •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: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- 다만,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※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일을 기준으로 산정
	교육시간	• 80시간
	교육정보	•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
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	근거	• 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, 제11조의 2, 제 20조, 제39조의 4
	대상	• 일반, 가정, 영아전담,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※ '14. 3. 1.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
	교육시간	• 80시간
	교육정보	• 원장 사전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

※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·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.
(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 가능)

※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, 특별 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(2025년 보육사업안내 P.219 참고)

보육교직원 법정의무교육(11종)

교육명	구분	내용
보육교직원 안전교육	근거	•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8 •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(p.118)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(3시간)
	교육정보	• 교육 과정 : 기본, 심화, 영아담당교사Ⅰ,Ⅱ, 유아담당교사Ⅰ,Ⅱ과정 중 택 1 • 내용 :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, 영유아 안전교육 방법 등 • 방법 : 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내 온라인 교육 수강
	교육기관	• 어린이집안전공제회 ※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교육	근거	• 결핵예방법 제11조, 동법 시행규칙 제4조, 제4조의2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(교육내용 숙지가 중요하며, 교육이수 시간은 관계없음)
	교육정보	• 내용 : 결핵 현황,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의 이해, 어린이집에서의 결핵 관리 • 방법 : 집합교육, 인터넷 강의 등 ※ 해당 교육은 지자체별 교육실시 시행안이 상이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여, 교육 실시 후 관할 보건소로 교육결과 제출 ※ 대한 결핵협회 결핵교육영상 '어린이집 종사자용' 영상 다운로드 및 교육 실시 후 자체 연수보고서 작성
	교육기관	• 대한결핵협회
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	근거	• 아동복지법 제 23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, 동법 시행령 26조 • 아동복지법 제26조의2(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),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정보	• 내용 : 아동학대 관련 법령,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, 피해 아동 보호절차 등 • 방법 : 집합교육, 시청각교육, 인터넷 강의 등
	교육기관	• 아동권리보장원,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
긴급복지 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	근거	•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(지원 요청 및 신고)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(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의무 관련 교육)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정보	• 내용 -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-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-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• 방법 : 집합교육, 인터넷 강의 등
	교육기관	• 한국보건복지인재원
성폭력 예방교육	근거	•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, 동법 시행령 제2조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매년 1회(1시간 이상) ※ 신규 임용 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
	교육정보	• 내용 -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- 성인지(性認知)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-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- 그 밖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• 방법 : 강의, 시청각교육,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,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 필수 포함 ※「아동안전교육」,「아동학대예방교육」 등 아동복지법 안전교육(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)도 예방교육으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인정 ※ 매년 1.1~12. 31까지 실시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(추진실적)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인구여성가족부 '예방교육통합관리' 시스템에 등록 필수 (http://shp.mogef.go.kr)
	교육기관	•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
자살예방 교육	근거	•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(24.07.12.시행)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(1시간)
	교육정보	• 내용 :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, 자기 이해와 돌봄·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,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사항, 자살 문제와 현황,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, 자살위기 대응 기술, 그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• 방법 : 집합교육,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※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시스템(https://edu.kfsp.or.kr/perform) 내 결과보고
	교육기관	•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※ 교육지정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은 경우만 인정, 그 외 교육기관 자체콘텐츠 인정 불가

교육명	구분	내용
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	근거	• 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 등) ※ 주무부처 : 보건복지부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 • 어린이집 원생(유아), 영아는 제외
	횟수	• 보육교직원 연 1회(1시간 이상) • 유아 연 1회(20분 이상)
	교육정보	• 내용 -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-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-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-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-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등 • 방법 :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,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 ※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기준 - 유아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: 유아 대상 대면교육 실시(보육교직원은 비대면교육 이수 가능) - 유아가 없는 어린이집: 보육교직원 대상 대면교육 실시 ※ 매년 1.1~12.31까지 실시한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(추진실적)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「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적관리시스템」에 추진 실적 등록(www.able-edu.or.kr)
	교육기관	• 한국장애인개발원
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	근거	•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(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)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정보	• 내용 -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-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-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-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• 방법 : 집합 교육,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원격 교육
	교육기관	•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, 온라인교육 : 마이에듀교사자람(http://jaram.ac)
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(어린이안전 교육,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)	근거	•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어린이안전법_ 제 16조) ※ 주무부처 : 행정안전부 ※ 어린이안전법 제17조에 의하여 어린이집은 어린이 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필수 ※ 어린이안전교육 최초 대상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. ※ 안전교육 전년도 실시 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 ※ 안전관리 담당자, 주된 업무가 교육, 보육, 상담,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※ 다른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면업무를 하는 사람은 교육 대상 제외(어린이집의 경우, 행정업무, 영양사, 조리원, 운전기사는 교육 미대상자)
	횟수	• 연 1회(4시간 이상 : 이론 2시간, 실습 2시간) ※ 이론교육(온라인교육 인정), 실습교육(집합교육만 인정)
	교육정보	• 내용 : 응급상황 행동요령, 주요 내·외과적 응급처치 이론,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등 • 방법 : 행안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수강
	교육기관	• 어린이집안전공제회(온라인 이론 교육만 운영), 육아종합지원센터 ※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, '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'에서 교육 이수 필수 ※ 이론(2시간), 실습(2시간)을 동일 지정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, 지자체(육아종합지원센터, 소방서, 보건소)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할 경우, 이론교육은 다른 지정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이수가능
고농도 미세먼지·오존 대응 교육	근거	•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(P.111)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정보	• 내용 :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 • 방법 : 집합, 온라인, 자체교육 등
	교육기관	• 어린이집안전공제회, 마이에듀 교사자람 등 ※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
등·하원 안전교육	근거	•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2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
	교육정보	• 내용 : 영유아의 등·하원 방법,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등·하원 안전교육
	교육기관	• 어린이집안전공제회, 마이에듀 교사자람 등 ※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

근로자 법정의무교육(5종)

교육명	구분	내용
개인정보보호 교육 (CCTV의무화)	근거	•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 ※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뿐만 아니라,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'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' 제4조 (내부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, 시행하여야 함.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정보	• 내용 - 개인정보의 개념 및 중용성 -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-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과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-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방법 및 예방대책 • 방법 : 자체교육, 온라인교육, 외부강사 초빙 등
	교육기관	• 한국인터넷진흥원, 마이에듀교사자람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	근거	• (장애인고용법)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※ 주무부처 : 고용노동부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정보	• 내용 -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-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-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-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-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등 • 방법 :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,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 **※ 매년 1.1~12.31까지 실시한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(추진실적)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「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」에 추진 실적 등록(www.able-edu.or.kr)**
	교육기관	• 한국장애인개발원
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	근거	• 근로기준법 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정보	• 방법 : 온라인교육
	교육기관	• 고용노동부, 마이에듀교사자람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	근거	•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) 동법 시행령 제 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)
	대상	• 사업주 및 모든 직원
	횟수	•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정보	• 내용 -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-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-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• 방법 : 집합교육, 인터넷 강의 등
	교육기관	• 한국보건복지인재원
퇴직연금 교육	근거	•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
	대상	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* 제외 대상 :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,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
	횟수	•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정보	• 내용 :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• 방법 : 집합교육, 온라인 교육, 서면 교육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
	교육기관	• 퇴직연금사업자 개별 문의 또는 근로복지공단

대상자별(담당업무, 규모별) 의무교육(11종)

교육명	구분	내용
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	근거	•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
	대상	• 연면적 430㎡이상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
	횟수	• 신규교육 : 1년 이내 1회(6시간) 보수교육 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(6시간)
	교육정보	• 내용 -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 - 실내공기질 향상 방법 -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이용 및 활용 등 • 방법 : 집합교육, 사이버교육
	교육기관	• 한국환경보전원
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	근거	•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
	대상	• 지정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※ '09.1.1.3 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
	횟수	• **신규교육 : 8시간 이상** ※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• **보수교육 : 2년마다 4시간 이상** ※ 신규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
	교육정보	• 내용 - 건축물 석면관리 - 석면지도의 이해 및 관리 -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역할 -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등 • 방법 : 집합교육, 사이버교육
	교육기관	• 환경부(국립환경인력개발원 e-러닝)
식품 위생교육	근거	• 「식품위생법」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
	대상	•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
	횟수	• **신규교육 : 6시간** • **보수교육 : 3시간**
	교육정보	• 내용 - 식품위생, 개인위생, 식품위생시책, 식품의 품질관리 등 • 방법 : 집합교육,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 교육 ※ 집단급식소를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집합교육
	교육기관	• 한국식품산업협회(1577-3869)
조리원, 영양사 위생교육	근거	• 「식품위생법」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, 84조
	대상	•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, 영양사
	횟수	• 매년 1회(6시간)
	교육정보	• 내용 - 식품위생 법령 및 시책 - 집단급식 위생관리 -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-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- 그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• 방법 : 집합교육, 인터넷 교육
	교육기관	• 조리사 : (사)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, 영양사 : (사)대한영양사협회
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	근거	•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
	대상	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책임자(담당 보육교직원)
	횟수	• 2년에 1회(4시간 이상) ※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: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※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: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※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: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
	교육정보	• 내용 -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-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-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• 방법 : 집합교육, 인터넷 교육
	교육기관	• 행정안전부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https://www.cpf.go.kr/cpf/ko/info/0010/index.jsp)

어린이통합 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	근거	• 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,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5
	대상	•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, 운전자
	횟수	• 신규교육 : 어린이통학버스 운영, 운전 하기 전(3시간) • 정기교육 : 2년마다 1회(3시간 이상)
	교육정보	• 내용 -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-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법령 -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주요 사고 사례 분석 - 그밖에 운전 및 승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• 방법 : 강의,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, 오프라인 교육
	교육기관	• 한국도로교통공단(온/오프라인 교육 선택 가능)
어린이통합 버스 동승보호자 교육	근거	•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[별표8], 2025년 보육사업안내(P,115)
	대상	•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
	횟수	•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 ※ 도로교통법 상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('20.5.23. 개정)
	교육정보	• 내용 -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-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법령 -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주요 사고 사례 분석 - 그밖에 운전 및 승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• 방법 : 강의,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, 오프라인 교육
	교육기관	• 한국도로교통공단(온/오프라인 교육 선택 가능), 157-1120
소방안전 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	근거	• 화재예방, 소방시설,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, 동법 시행규칙 제36조
	대상	• 소방서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
	횟수	• 신규교육 :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• 보수교육 : 최초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※ 온라인(40분), 오프라인(4시간), 온·오프라인 모두 이수 필수
	교육정보	• 내용 -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-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-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요령 -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등 • 방법 : 집합교육,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
	교육기관	• 한국소방안전원(1899-4819)
성희롱 · 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	근거	•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
	대상	• 고충 담당자(상담원)
	횟수	•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 1회
	교육정보	• 내용 - 성인지 감수성,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- 성희롱(성폭력) 관련 법제도, 사례 분석 -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 • 방법 : 집합교육,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
	교육기관	•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,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
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	근거	•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
	대상	• 승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
	횟수	• 신규교육 :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(4시간) • 보수교육 : 3년에 1회(4시간)
	교육정보	• 내용: 승강기 관계 법령, 승강기 구조 및 원리,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, 승강기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• 방법 : 집합교육, 현장교육, 인터넷 원격교육 등
	교육기관	•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-승강기교육센터
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	근거	•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(p.122)
	대상	•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
	횟수	• 매년 1회
	교육정보	• 내용 : 영유아 성행동 문제 지도 및 대응방법 ※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 관리·대응 매뉴얼 참고
	교육기관	•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-러닝(https://lms.educare.or.kr/lms/intro.edu)